# 제 10강 노동조합

임서정

# 오늘의 학습목표

- ▶ 01. 노동조합의 설립
  -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
  - 어떠한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가?
  -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은 어떤 보호를 받는가?
- ▶ 02. 노동조합의 운영
  - 노동조합은 어떻게 가입하는가?
  -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가?
  -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무엇인가?
- ▶ 03. 노동조합의 보호: 부당노동행위제도 ①
  -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무엇인가?
  -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?
  -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법은 무엇인가?

01. 노동조합의 설립

### 1. 노동3권과 노동조합

- ◆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**자주적인 단결권•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** 권을 가짐(헌법 제33조 제1항)
  -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 단결하여 단체를 결성하고,
  - 이렇게 결성된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
  - 사용자와의 교섭에 있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들이 헌법상 기본권의 수준에서 보장됨
- ◆ 이렇게 노동3권이 **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**된다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모든 국가기관들이 그들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노동3권을 존중하여야 함을 의미함

#### (1) 노동조합의 개념

- ◆ 노동조합이란 **근로자들이** 근로조건의 유지◆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◆사회적 지위 위의 향상을 위하여 **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**를 말함(노조법 제2조 제4호)
  - ▶ 노동조합은 **'근로자'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**한 것이어야 하므로,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(예를 들어 개인택시기사, 개업의사)들이 결성한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님
- ◆ 노동조합 중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일컬어 '단위노동조합'이라고 하고,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'연합단체'라고 함
  - ▶ 단위노동조합에는 특정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만으로 결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은 물론 전국금속노동조합(금속노조)과 같이 전국적 단위에서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로 결성된 경우도 있음

#### (2)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: 노조법상 '근로자'

- ◆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람, 즉 노조법상 '근로자'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•급료 **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**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(노조법 제2조 제1호)
- ◆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그 인정범위가 넓음
  - ▶ 최근 대법원은 **학습지 교사**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학습지 교사가 근 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하였고, 나아가 노조법상 **근로자성은 '경제적•조직적 종속** 성'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(대 법원 2018.6.15. 2014두12598, 12604(병합))
  - 즉,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노무제공자가 특정한 특정 사업자로부터 주로 소득을 얻는지, 그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,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등을 판단요소로 고려

### 3. 노동조합의 요건

- ◆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외(또는 요건)에 부합하고 설립신고를 마쳐야 함
  -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마친 노동조합을 법내노조라 하며, 법내노조에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음

#### (1)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

- ◆ 어떠한 결사(結社)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**주체성, 자주성, 목적성 및 단체성**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. 그에 더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
  - 가.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
  - 나.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
  - 다. 공제•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- 라.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
  - 마.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#### (2) 노동조합 설립신고

- ◆ 노조법 제5조 제1항은 "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"고 규정
  - 반면,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(노조법 제10조 제1항)
  - ▶ 나아가 **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**만이 "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"이라고 규정
- ◆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**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**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
  - > 이 때 설립신고서와 규약에는 법정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- ◆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심사하여 제출 서류들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고, 노동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행정관청이 요구한 보완을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함
  - ▶ 행정관청은 제출 서류들에 문제가 없거나(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한 경우를 포함) 노동조합의 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는 신고증을 교부함
  - ▶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**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**된 것으로 봄
- ◆ 참고로 기존에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 그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음(시행령 제9조 제2항)
  - ▶ 이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(2020.9.3. 2016두)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

#### (3) 법내노조와 법외노조

- ◆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근로 자단체만이 **노동조합이라는 명칭**을 사용할 수 있음(노조법 제7조 제3항)
  - 또한 노동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수 있음(노조법 제7조 제1항)
  - → 그 밖에 법인격의 취득(노조법 제6조), 조세의 면제(노조법 제8조)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
- ◆ 근로자들이 조직한 결사체가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'설립신고'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, 실질적 설립요건을 갖춘 때에는 '법외노조'에 해당
  - ▶ 노조법에서 "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"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한 조항 이외 의 노조법 규정들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됨(서울행정법원 2005.4.21. 2004구합35356)

02. 노동조합의 운영

### 1. 노동조합의 구성원: 조합원

#### (1) 노동조합 가입

- ◆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지만(노조법 제5조), 노동조합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**자격을 규약에서** 정할 수 있음(노조법 제11조 제4호)
  -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, 노동조합이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이 이루어짐

#### (2) 조합원 자격과 가입 거부

- ◆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,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 조항이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
  -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한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
    로 거부할 수는 없음

### 1. 노동조합의 구성원 : 조합원

#### (3) 조합원의 제명

- ◆ 노동조합은 **규약이나 결의**로 조합원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**제재를 가할 수 있음** 
  - ▶ 그러나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재량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됨
- ◆ 특히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**제명의 경우**에는 그러한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임

### 1. 노동조합의 구성원 : 조합원

#### (4)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

- ◆ 노조법은 "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"는 규정을 신설(제23조 제1항)
  - 따라서 노조 임원 등의 자격은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, 다만 기업별 노조
    의 임원 등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
- ◆ 한편, 노조법은 "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 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"고 규정 (제17조 제3항)
  - 따라서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

### 1. 노동조합의 구성원 : 조합원

#### (5)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

- ◆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, 회사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(비종사 조합원)의 **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범위**가 문제가 됨
  - ▶ 이에 노조법은 "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(종사근로자)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(비종사 조합원)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"고 규정함(제5조 제2항)

### 2. 노동조합의 운영

#### (1) 노동조합의 기관

- ◆ 노동조합은 **매년 1회 총회**를 개최하여야 하고,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외 장이 됨
  - 노조법은 총회의 의결사항, 의결 또는 투표 방법,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구성, 임 시총회와 대의원회, 총회 등의 소집절차, 표결권의 특례, 임원의 선거 등에 관한 상세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, 이러한 규정들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

#### (2) 행정관청의 관여

- ◆ 행정관청은 제한된 범위에서 **노동조합의 운영에 관여**할 수 있음
  -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
    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

### 2. 노동조합의 운영

- ▶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음
- ▶ 또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**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**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

#### (3) 노동조합의 해산

노동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 함

-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
-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
- ④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

### 3. 근로시간 면제제도

#### (1)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

- ◆ 노조법은 **근로시간 면제제도**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사용자로 부터 급여 를 받는 자를 **'근로시간 면제자'**라 함
  - ▶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'임' 금의 손실 없이' 사용자와의 협의•교섭, 고충처리,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•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(노조법 제24조 제2항)

#### (2)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연혁

◆ 노조법은 제24조의 표제를 "노동조합의 전임자"에서 "근로시간의 면제" 등으로 개정하고, 노조법의 본문에서 '전임자'라는 표현을 삭제함

### 3. 근로시간 면제제도

- ▶ 한편 노조법은 "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"고 규정함(제24조 제1항)
- ▶ 즉 근로시간 면제자는 **사용자로부터 급여(임금)를 지급**받을 수 있음

#### (3) 근로시간 면제제도

- ◆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'근로시간 면제 한도'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정함
  - →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(제24조 제2항)
  - ▶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도 금지됨(제81조제1항 제4호)

03. 노동조합의 보호: 부당노동행위제도 ①

### 1. 부당노동행위의 의의

- ◆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이루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취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의 대표적인 예로서,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실현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는 것임(현재 2009.2.26. 2007헌바27 결정)
- ◆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행위 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함(제81조 제1항)
  - ▶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정적 구제를받을 수 있음(제82조 이하)
  - 또한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법 규정을 두어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처벌 하고 있음(제90조)

### 2.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자 : 사용자

- ◆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를 지켜야 하는 자는 사용자임
  -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
    사용자를 말함
  - ▶ 한편,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•결정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,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(대법원 2010.3.25. 2007두8881)

- ◆ 노조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
  - ▶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(1호)
  - ▶ 노동조합 불가입•탈퇴 또는 특정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(제2호)
  - ▶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(제3호)
  -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•운영을 지배•개입하는 행위,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,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(제4호)
  - ▶ 단체행위 참가,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(제5호)

#### (1) 불이익취급(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, 제5호)

- ◆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두 가지임
  - ① 근로자가 **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** 하였거나 **노동조합을 조직**하려고 하였 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**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**을 주는 행위(1호)
  - ②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(5호)
- ◆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흔히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하는데, 조합 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 여 기에 속함

- ▶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 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 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봄
- ◆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보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됨
  - ▶ 정당한 조합활동이 실질적인 해고사유였는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, 해고를 한 시기,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,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,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,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,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함

#### (2) 반조합계약(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)

- ◆ 근로자가 **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**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**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**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 계약이라 함
  - 반조합계약은 조합활동 여부와 고용조건을 연결시킴으로써 조합활동을 억제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조합활동만을 허용하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임
- ◆ 유니온 숍 조항도 형식적으로 보면 반조합계약에 해당하지만, 현행법은 그것이 단결강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니온 숍 조항을 허용
  -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조합계약으로 보지 않음

-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음
- ◆ 반조합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**사법상 당연히 무효**임
  - 그러므로 이런 계약이나 서약서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활동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음
- (3) 단체교섭의 거부(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)
- ◆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**거부하거나 해태**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
- ♦ 이에 대해서는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

#### (4) 지배•개입(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)

- ◆ 근로자가 **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**하는 행위 와 **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**하거나 **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**도 부당노동행위임
  -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또는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활동의 방해, 금전을 통한 조합간부의 매수, 향응을 통한 노 동조합의 어용화, 조합행사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및 교란,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부서 배치전환, 조합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발 급을 거부하여 출마를 방해하는 행위, 노사합의로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

- ◆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**근로시간 면제활동**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, 또한 **근로자의 후생자금**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**기금의 기부**와 최소한의 규모의 **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**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**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**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  - "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"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
    - 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
    - ②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
    -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
    - ④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
    -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

- ◆ 한편 지배•개입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**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표명**임
  - ▶ 사용자가 연설, 사내방송, 게시문,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,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, 시점, 장소,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'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'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, 또 그 지배•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(대법원 2006.9.8. 2006도388)

## 참고자료

주 자료: 한국노동법학회(2022), 교양노동법 제3판, 문우사.

보조자료: 임종률(2022), 노동법 제20판, 박영사.

사례참조: 박귀천•박은정•권오성(2021),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, 박영사.